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기관의장
람	

제1698호 2022. 9. 26.(월)

차 례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23호 2022년 『새오개로 간판 개선 사업』 광고물 등 정비시범 구역 지정 및 표시방법 고시 ————— 1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24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 6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698호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9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712호 등록 공인 공고 ————— 17
- 인천광역시서구검단출장소 공고 제57호 I-Food Park 처분신청 산업시설용지 매각공고 ————— 20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22-123호

2022년 『새오개로 간판 개선 사업』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방법 고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시범구역 내 광고물 등의 표시 규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9. 26.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노후 · 불법 간판이 다수 설치된 새오개로 일원(위치도 참조)을 정비시범구역으로 지정하고 광고물의 규격, 수량, 크기, 종류 등의 표시방법을 고시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품격 있는 도시경관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 동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8조,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으로 지정 · 고시하는 지역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3조(정비시범구역의 지정) ① 정비시범구역은 다음과 같다.

[사업명: 새오개로 간판개선 사업]

- 사업기간: 2022. 3. ~ 2022. 12.
- 사업비: 4억2천 범위내
- 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새오개로 일원[위치도 참조]

연번	시점	종점
1	새오개로 37(석남동 199-135)	새오개로 15(석남동 183-69)
2	새오개로 38-1(석남동181-11)	새오개로 8-1(석남동 190)

※ 사업대상: 도로구간과 접하는 토지 및 건물(점포)

- 예산지원: 지정된 정비시범구역에서 고시한 기준에 따라 광고물 등을 표시·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디자인 및 제작 설치비 지원

제4조(광고물 등의 디자인)

- ① 옥외광고물 등의 디자인은 건축물 및 주변환경과 조화가 되도록 크기를 정하고 건축물의 이미지와 대비되지 않도록 디자인하여야 한다.
- ② 같은 건축물에 표시되는 광고물 등의 경우, 인접 광고물과 통일성을 이루도록 디자인하여야 한다.
- ③ 획일화된 디자인을 지양하고 업소별 특징 및 개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광고물 등의 일반적인 표시방법)

- ① 1개 업소 1개 간판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는 벽면이용간판 1개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 ② 사업구간 내 업소 중 디자인이 우수하고 이 고시의 표시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광고물 등을 설치하고 있는 업소의 간판은 개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③ 모든 광고물, 게시시설 이를 지지하는 구조물은 구조적, 전기적으로 안전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광고물의 재질은 유연성 원단(플렉스 등) 사용을 지양하고, 업소의 특성과 건축물 및 주변 환경에 어울리는 다양한 재료 사용을 권장한다.

④ 조명은 모두 비점멸 LED(KS인증업체 제품) 조명을 사용한다.

제6조(벽면이용간판의 표시방법)

- ① 건물의 1층은 판류형 또는 입체형으로, 2층 이상 층은 입체형으로 설치한다. 특히 건물의 1층은 벽면에 미관을 고려하여 판류를 설치하고 그 위에 입체형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가로 크기는 해당 업소 가로 폭의 80%이내를 권장하나 건물의 환경 및 외벽의 상태에 따라 업소 폭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세로 크기는 업소의 창문과 창문간 이내로 하며 최대 1.5m 이내로 한다.

제7조(돌출간판의 표시방법)

- ① 돌출간판의 신규 설치와 연장 허가 표시·설치를 금한다. 다만, 의료기관·약국 또는 이용업소·미용업소의 표지등의 경우에는 도로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표시할 수 있다.

제8조(지주이용간판의 표시방법)

- ① 지주 이용 간판의 신규 설치와 연장 허가 표시·설치를 금한다.

제9조(옥상간판의 표시방법)

- ① 옥상 간판의 신규 설치와 연장 허가 표시·설치를 금한다.

제10조(창문이용광고물의 표시방법)

- ① 건물 2층 이하에 천·종이·비닐 등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여 해당 업소의 유리벽의 안쪽, 창문 또는 출입문에 직접 붙이는 경우에는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4분의 1 이내로 광고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 ② 창문 이용 광고물은 그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표·전화번호·영업내용 또는 상징형 도안만 표시하여야 한다.

제11조(광고물 등의 심의)

- ① 건물의 특성 및 지역 여건 상, 이 고시의 표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합하고, 도시경관과 생활환경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표시 방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12조(사후관리)

- ① 정비시범구역 내 옥외광고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옥외광고물 담당부서와 사전협의 후 표시하여야 한다.
- ② 건축주 및 건물주 등은 정비시범구역 내 건축물을 분양·임대할 경우 계약서 상에 옥외광고물 정비시범구역임을 명시하여 분양계약자 및 임차인(광고주) 등이 정비시범구역 고시 기준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및 허가·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설치 또는 표시되었거나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 등은 이 고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광고물 등의 표시 기간 만료일까지 표시할 수 있다.

제3조(준용기준)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및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사업구간 위치도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22-124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9. 26.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부여·폐지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로 271 외 19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폐지)사유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 여 사 유
		별 도 열 략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2.9.26.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 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 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고시일 : 2022-9-26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94-60	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로 271 (원창동)	20090922	인천의 대표적 향구인 북항을 지나는 도로	
2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94-59	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로 277 (원창동)	20090922	인천의 대표적 향구인 북항을 지나는 도로	
3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94-12	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로 285 (원창동)	20090922	인천의 대표적 향구인 북항을 지나는 도로	
4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0	인천광역시 서구 바리미로5번길 26 (원당동)	20200720	바리미로 50미터 지점에서 분기하는 도로	(검단신도시 주11)
5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0	인천광역시 서구 이음5로 24 (원당동)	20200420	'서로플 이음'에서 착안. 신도시의 동서를 잇는 다섯번째 도로	스리젤타워 (검단신도시 C10-2-1)
6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750-7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로46번길 15 (경서동)	20090922	경서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7	인천광역시 서구 급곡동 633-1	인천광역시 서구 향동로 82 (급곡동)	20090710	지역명칭 인용	(주)정문개발
8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0	인천광역시 서구 이음5로 30 (원당동)	20200420	'서로플 이음'에서 착안. 신도시의 동서를 잇는 다섯번째 도로	검단 연세프라자9 (검단신도시 C10-1-3)
9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97-9, 97-1	인천광역시 서구 건지로366번길 7-1 (가좌동)	20090922	건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6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조서

고시일 : 2022-9-26

연번	도로명주소	폐지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348번길 15 (왕길동)	검단출장소-30791(2022.09.07.)호에 의거	20081231	검단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4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	인천광역시 서구 단봉로85번길 39-1 (왕길동)	검단출장소-30791(2022.09.07.)호에 의거	20090922	단봉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8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348번길 21 (왕길동)	검단출장소-30791(2022.09.07.)호에 의거	20081231	검단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4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4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348번길 10 (왕길동)	검단출장소-30791(2022.09.07.)호에 의거	20081231	검단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4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공장
5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427번길 41-5 (왕길동)	검단출장소-30791(2022.09.07.)호에 의거	20081231	원당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2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6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427번길 41-4 (왕길동)	검단출장소-30791(2022.09.07.)호에 의거	20081231	원당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2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7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1369-13 (왕길동)	검단출장소-30791(2022.09.07.)호에 의거	20090710	도로 구간 인근에 봉수대가 있었음	공장
8	인천광역시 서구 한들6로 17 (백석동)	건축과-38295(2022.9.16.)호에 의거	20121025	한들이란 자연부락 명칭을 반영한 여섯번째 도로	
9	인천광역시 서구 단봉로216번길 38-1 (오류동)	건물말소	20090922	단봉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1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0	인천광역시 서구 단봉로216번길 34 (오류동)	건물말소	20090922	단봉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1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1	인천광역시 서구 단봉로216번길 28 (오류동)	건물말소	20090922	단봉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1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2-1698호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9. 26.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이유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2022.6.22. 시행)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2022.6.22. 시행)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위원회 관련 일부 규정을 개정하여 법체계의 통일성 및 위원회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아동급식 지원 목적 근거 법령 인용조문 수정(안 제1조)
- 아동급식 지원대상 법령 인용조문 수정(안 제3조)
- 위원회 위원장 수정(안 제9조제2항)
- 위원회 당연직 위원 수정(안 제9조제3항)
- 위원회 간사 수정(안 제9조제4항)

3.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10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참조: 아동행복과, 전화 560-4424, 팩스 560-274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2022.6.22. 시행)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2022.6.22. 시행)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위원회 관련 일부 규정을 개정하여 법체계의 통일성 및 위원회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아동급식 지원 목적 근거 법령 인용조문 수정(안 제1조)
- 나. 아동급식 지원대상 법령 인용조문 수정(안 제3조)
- 다. 위원회 위원장 수정(안 제9조제2항)
- 라. 위원회 당연직 위원 수정(안 제9조제3항)
- 마. 위원회 간사 수정(안 제9조제4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아동복지법」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
- 나. 예산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가정교육과 합의
- 라. 기 타
 - 1) 규제심사: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아동복지법」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을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을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구청장이 임명하고”를 “아동급식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담당 국장 및”을 “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아동업무”를 “아동급식업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아동복지법</u>」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지원대상) 「<u>아동복지법</u>」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른 급식지원의 대상자는 인천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p> <p>1. ~ 3. (생략)</p> <p>제9조(위원회 구성) ① (생략)</p> <p>② 위원장은 <u>구청장이</u>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급식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1. ~ 6. (생략)</p> <p>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구의 <u>아동업무</u> 담당이 된다.</p>	<p>제1조(목적) ----- 「<u>아동복지법</u>」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 ----- -----.</p> <p>제3조(지원대상) -----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제9조(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아동급식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u> ----- -----.</p> <p>③ ----- <u>담당</u> ----- ----- -----.</p> <p>1. ~ 6. (현행과 같음)</p> <p>④ ----- ----- --- <u>아동급식업무</u> -----.</p>

관계법령 발췌

「아동복지법」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 ① 생략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 1.~ 2. 생략
 3. 급식지원 등을 통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
 4. 생략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급식최저단가를 결정하고 제2항제3호에 따른 급식지원 시 이를 반영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21.>
- ④ 생략
-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원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2항제3호 및 제3항에 따른 급식지원의 지원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한다. <개정 2021. 12. 21.>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급식지원)

- ① 생략
-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5조 제5항 단서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아동 중에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지원을 해야 한다. <개정 2022. 6. 21.>
- ③~⑤ 생략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급식지원의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2. 6. 21.>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 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 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와 이익 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기타 문제점		
실·국(군·구)별 의견			
협약개요	실·국별	제출의견	검토내용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2-1712호

등록 공인 공고

「인천광역시 서구 공인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된 공인을 같은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9. 26.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공인 등록 사유

: 인천광역시 서구 구민고충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2. 공인 등록일 : 2022년 9월 26일

3. 등록 공인명 및 인영 : “별첨” 참조

등록 공인 목록

연번	공인명	종류	규격(cm)	등록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서구구민고충처리위원회인	청인	3.6 x 3.6	인천광역시서구구민고충처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 따른 공인 등록	
2	인천광역시서구구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인	직인	2.1 x 2.1	인천광역시서구구민고충처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 따른 공인 등록	

□ 등록 공인 내역

등록공인명	등록사유	등록일자	인 영
<p>인천광역시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인</p>	<p>인천광역시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따른 공인 등록</p>	<p>2022년 9월 26일</p>	
<p>인천광역시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인</p>	<p>인천광역시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따른 공인 등록</p>	<p>2022년 9월 26일</p>	

인천광역시서구검단출장소 공고 제2022-57호

I-Food Park 처분신청 산업시설용지 매각공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I-Food Park 일반산업단지 내 처분신청 산업시설 용지를 다음과 같이 매각 공고합니다.

2022. 9. 26.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출장소장

1. 처분대상 용지

용 도	소 재 지	용지면적	처분가격(원)
산업시설구역 (공장용지)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745-1	1,702.9㎡	1,896,186,000원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5항에 따른 양도가격
- ※ 천원단위 미만 절사

2. 신청자격 및 제한업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제2조에 적합한 공장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I-Food Park 관리기본계획(인천광역시 고시 제2022-147호, 2022.06.01.)에 적합한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 입주대상업종 : 식료품 제조업(C10)

※ 도축업(C1011), 곡물도정업(C10611),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C1080), 위험물품보관업(H52104)의 업종은 제한함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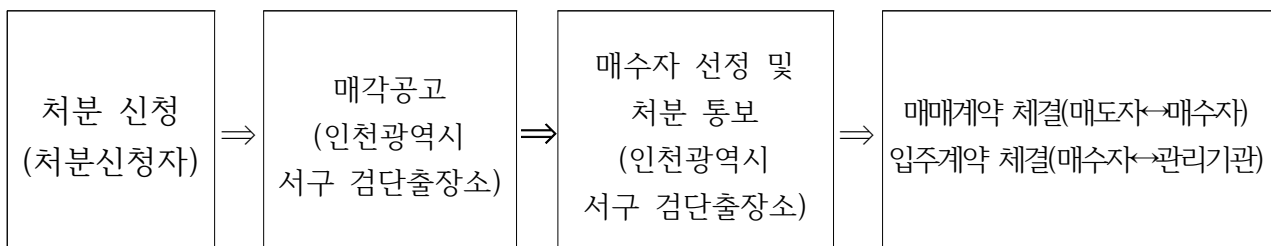
※ 허용업종 중 다음의 특정유해물질 기준 농도 이상 배출하거나 위해도지수(1)를 초과 배출하는 업체의 입주를 제한함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서 정하는 ‘특정대기유해물질’
-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서 정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
- 「악취방지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지정악취물질’

○ 입주 우선순위

1순위	인천광역시 관내에서 기존공장을 이전 또는 확장하고자 하는 식료품 제조업체
2순위	인천광역시 외 지역에서 기존공장을 멸실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매각하고 이전 또는 확장하는 식료품 제조업체
3순위	기타 입주희망 기업체 (입주 가능한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신규업체 등)

3. I-Food Park 입주계약 및 매매계약 절차



4.

분양일정

구 분	기 간	장 소	비고
모집(매각) 공고	2022. 9. 26.(월) ~ 10. 11.(화)	인천 서구청 홈페이지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www.seo.incheon.kr www.factoryon.go.kr
입주신청 접수	2022. 10. 12.(수) ~ 10. 14.(금)	인천 서구 검단출장소	방문접수 (접수시간 : 09:00~18:00)
입주 심사	2022. 10. 17.(월)	인천 서구 검단출장소	업종 및 사업계획서 등 서류 검토
입주(추첨)대상자 결정통보	2022. 10. 18.(화)	개 별 통 보	
입주대상자 선정 (추첨)	2022. 10. 19.(수) 16:00	인천 서구 검단출장소	
선정 업체 통보	2022. 10. 20.(목)	개 별 통 보	
용지 매매계약 체결	2022년 10월 중	양도·양수자간 별도 협의	처분신청자↔입주대상자 (선정업체 통보 후 10일 이내)
차순위 용지 매매계약 체결	2022년 10월 중	인천 서구 검단출장소	선정업체 취소시 처분신청자↔차순위 대상자
입주계약 체결	2022년 10월 중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인천 서구 검단출장소	입주대상자↔검단출장소
대금납부 완료 (소유권 이전)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처분신청자↔입주 대상자

※ 상기 일정은 입주신청 및 심사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5.

대금지불조건

- 매수자로 선정된 자는 선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신청자와 매매계약 체결 및 대금 지불을 완료하여야 하며, 매매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I-Food Park 일반산업단지 관리기관인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출장소와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대금 지불방법

구 분	계 약 금	중 도 금	잔 금	비 고
납부액	10%	없음	90%	
납부기한	계약 시	-	입주대상자 통보일로부터 30일	

※ 매도·매수 업체가 정하는 사항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6. 양도대상자 결정 방법

- 입주심사 후 입주 우선순위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며, 동일 순위인 업체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현창 추첨을 통해 입주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어 통보 받은 이후 10일 이내에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차순위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 차순위자도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단독신청 등으로 차순위자가 없을 경우에는 처분신청한 기업이 추천하는 기업을 양수대상기업으로 선정합니다.
- 입주선정자는 분양용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법인전환 또는 법인 분할, 합병 등의 명의변경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입주대상 업종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선정이 취소되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 기재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 선정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 입주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매각공고 후 처분신청자가 개인사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처분신청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경우, 처분절차가 중지, 취소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제출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입주신청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신청서, 산업단지 입주계약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개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포함)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정보 활용 동의서 1부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인감날인), 신분증 각 1부 - 종람확인서 1부 - 공장등록증 1부(기존 공장이 있는 경우)
추 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인감날인), 인감증명서, 신분증 각 1부
입주계약 (입주대상자 선정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매계약서 1부, - 신분증 및 인감도장(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포함) - 법인(개인)인감증명서 1부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각 1부

※ 제출서류는 매각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원본이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신청자는 입주자격 요건 및 입주제한요건을 사전에 관련부서에 문의하신 후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 공공폐수, 세금, 건축 등)

8.

처분제한

- 금회 분양용지는 산업단지내 산업시설용지로서, 산업용지를 양도받은 자는 「산업집적법」에 따라 공장설립완료신고 전 또는 신고 후 5년 이내에는 양도받은 산업용지를 타인에게 매각할 수 없으며, 처분하려는 경우 관리기관에 처분신청을 하여 양도하여야 합니다.

9.

유의사항

1. 본 산업용지는 기존에 분양받은 기업이 「산업집적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우리 구에 처분신청한 용지이며,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출장소는 양도대상자를 선정하고, 양도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처분신청 업체와 매매계약 체결 및 대금지불을 완료하여야 하며, 처분신청업체와 매매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산업단지 관리기관인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출장소와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2. 지정용도 사용의무
 - 입주대상자는 “목적용지”의 매수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확약한 바와 같이 “목적용지”를 매수하여 “목적사업”에 맞는 건축물을 건축한 후 지정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양도 받은 용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입주계약에 의한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 「산업집적법」 제41조에 따라 그 용지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3. 개발기한의 의무
 - 양도·양수계약자가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2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공장등의 준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입주계약을 해지하고 용지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착수”의 의미는 「산업단지관리지침」 제18조에 따름)
4. 기타사항
 - 본 공고 이후 입주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처분신청자가 추천하는 자를 입주대상자로 선정합니다.
 -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후에 공장 일부에 대한 임대는 가능하나 전체 임대는 불가합니다. (※완료 신고 전 임대 불가)

- 매매계약체결 및 소유권 이전 관련 사항은 처분신청자와 매수자 상호간 책임 하에 협의·처리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은 토지에 대한 입지여건, 소유권, 근저당, 가압류, 임대관계, 채권, 기타 권리관계, 관련 서류(등기부등본 등) 일체를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 입주대상자는 본 산업단지의 조성을 위한 개발계획,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 실시계획, 환경·교통 등 각종 영향평가의 협의내용, 에너지사용 계획 및 토지이용에 관한 제반 관계법규와 건축 관련법규(건축법령, 조례 포함) 등을 계약체결 이전에 반드시 열람·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책임은 입주대상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법규에 따라야 하며, 규제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강화된 법규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 입주대상자는 토지의 조성상태, 현황(형상, 고저, 암반, 법면상태, 기타 토지이용 장애사항 등) 및 사업지구 내·외의 입지여건을 충분히 직접 확인한 후 이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관리기관과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및 환경·교통 등 각종 영향평가에 관한 관계기관과의 협의 또는 인허가 사항과 「산업집적법」 제45조에 따라 산업단지의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 입주·분양계약자가 이행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입주·분양계약자는 그 지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어 입주계약을 완료하였더라도 입주업종이 당초 신청한 업종이 아니라는 관리기관의 판정이 있을 경우 입주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입주업종을 충분히 검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토지 사용시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사항과 환경·교통 등 각종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우수·오수·상수 분기시설은 단지 조성공사 계획에 따라 설치·연결하여야 하며, 토지 사용 중 도로·상하수도·경계석·가로수 등의 공공시설물을 파손·훼손한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합니다.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제반 사항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 관리지침」, 「I-Food Park 관리기본계획」,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I-Food Park 산업단지 계획(변경)승인 및 지형도면고시」 등에 따라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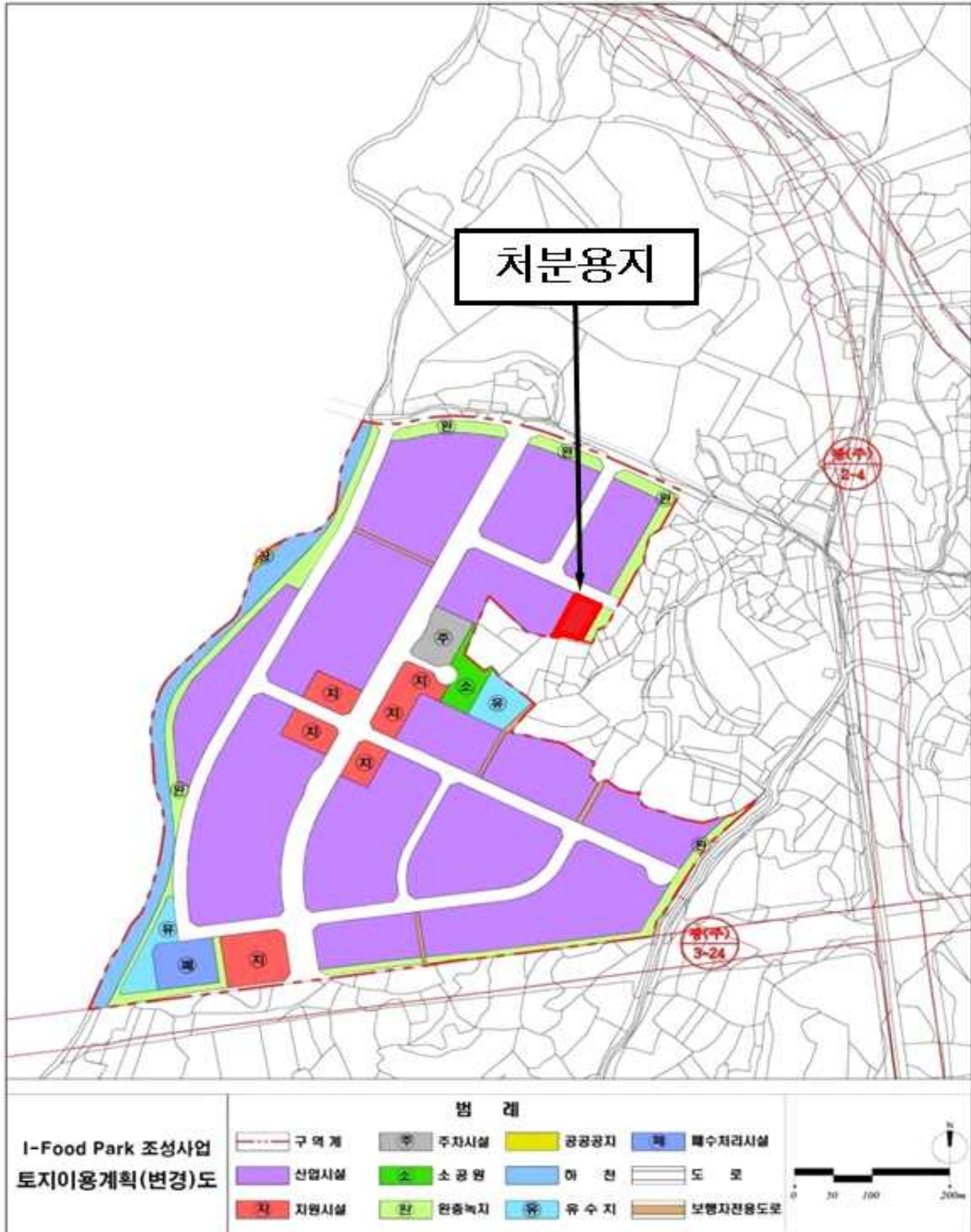
10.

접수 및 문의

- 접 수 처
 - 주 소 :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502번길 15(마전동), 검단출장소 기업지원팀
 - 접수방법 : 방문접수(인터넷이나 우편접수 등은 받지 않습니다.)
 - 접수기간 : 2022. 10. 12.(수) ~ 10. 14.(금) (접수시간 : 09:00~18:00)
-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출장소 기업지원팀(☎032-718-15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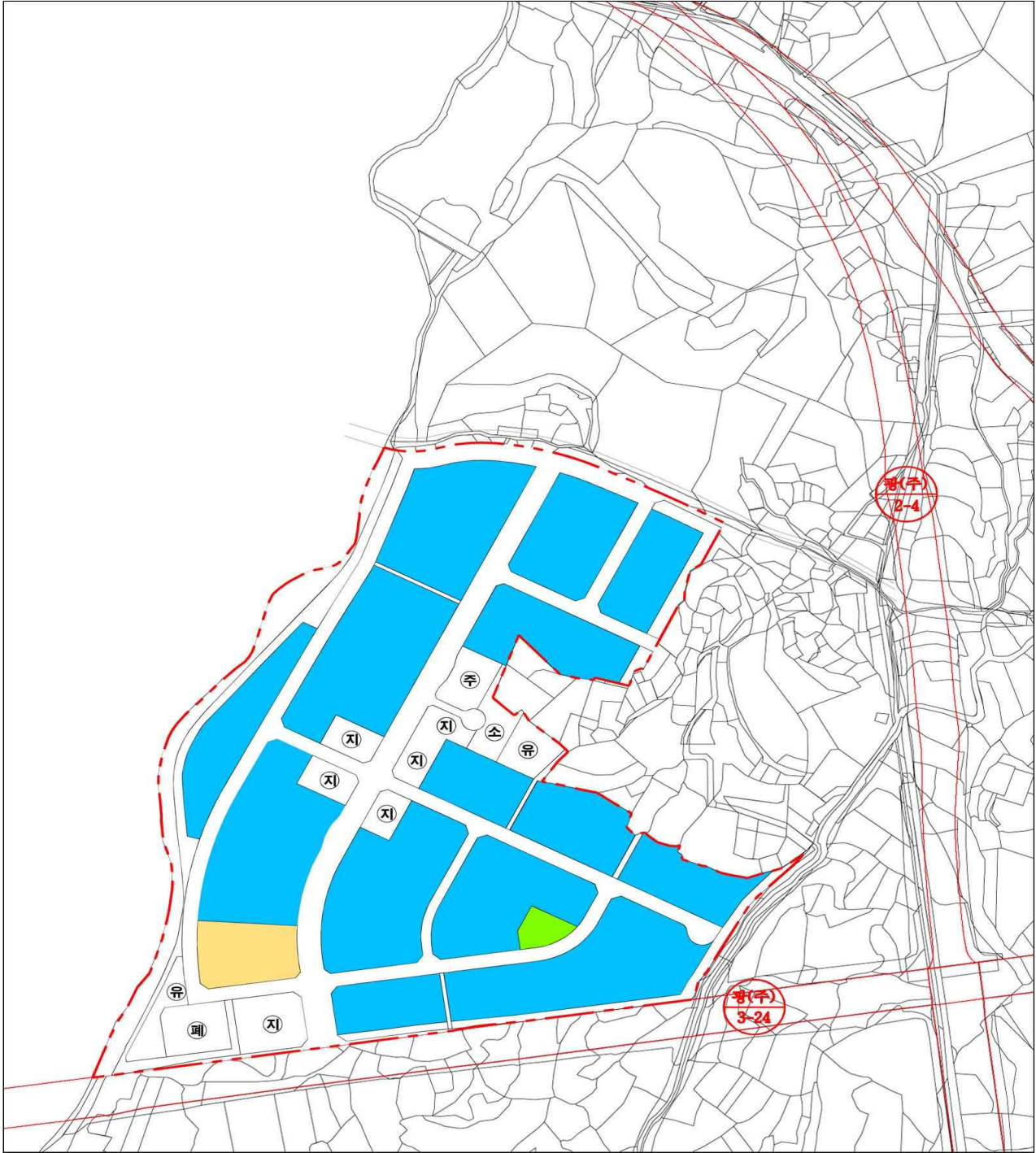
붙임1

처분신청 산업용지 위치(토지이용계획도)



붙임2

업종배치계획도



I-Food Park 조성사업 유치업종배치계획(변경)도	범 례		 S=1:2,000 0 50 100 200m
	구역 계 식료품 제조업(C10)	음료 제조업(C11)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H52)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2.10.5>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www.fem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업단지입주 [√]계약 []계약변경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10일)
-------------	------------	---

신청인	회사명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법인 소재지)	

입주 계약 신청 내용	공장(사업장) 소재지			
	입주형태	[] 분양	[] 임차	[] 양도·양수 [] 기타
	회사명	대표자 성명		
	업 종	분류번호	첨단업종(적용범위)	생산품(서비스)
	규 모	부지 면적(m ²)	건축 면적(m ²)	제조시설 면적(m ²)

기존 공장	회사명	대표자		
	소재지			
	업 종	분류번호		
	규 모	부지 면적(m ²)	제조시설 면적(m ²)	부대시설 면적(m ²)

계약 변경사항, 사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업단지 입주계약(변경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서구검단출장소장 귀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업단지 입주계약(변경계약)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서구검단출장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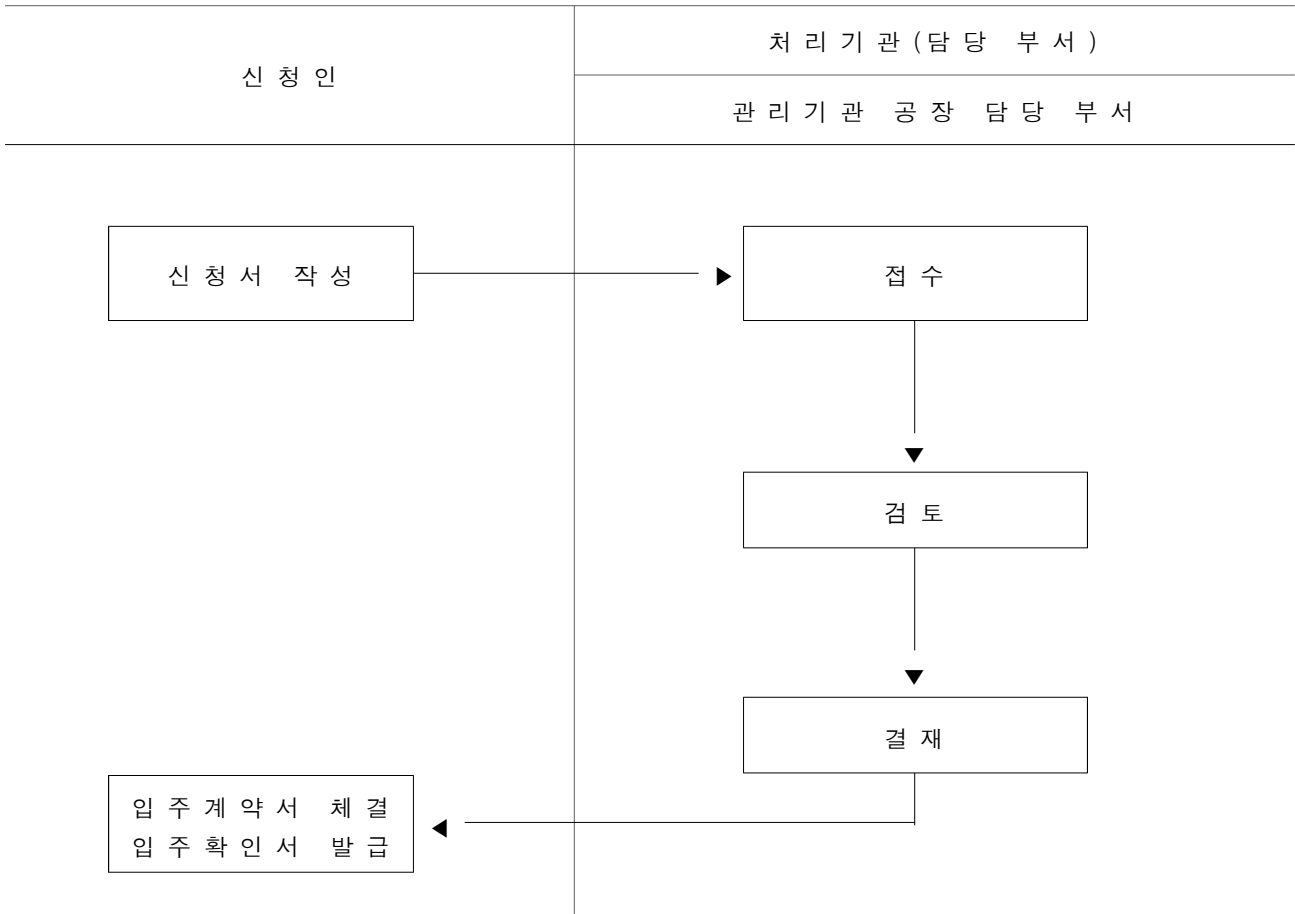
직인

(뒤쪽)

첨부서류	1. 산업단지입주계약신청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임대사업계획서) 1부 2. 변경계약신청의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와 변경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서 각 1부	수수료 없음
------	--	-----------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개정 2020. 2. 28.>

(제1쪽)

사 업 계 획 서

2022

회 사 명
대 표 자

직인

(제2쪽)

1. 사업개요

업체 현황	회사	명칭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홈페이지 주소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이메일 주소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팩스번호	

생산 제품 현황	업종(5단위)
	생산품명
	주 원자재

공장 현황	공장 주소						
	형 태	분양() 경매() 양도() 양수() 임대()					
	용도지역						
	지 목						
	공 장 건 설 계 획	사업자등록번호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또는 준공일					
		사업 시작일					
	공 장 의 규 모	종업원 수	국내	남	여		
			국외	남	여		
		용지 면적					m ²
		건축 면적		제조시설:			m ²
건축 면적/용지 면적		부대시설:			m ²		
기준공장 면적을					%		
건폐율					%		
용적율					%		

투자 규모	계	백만원
	자기자본	백만원
	타인자본	백만원
	외국인 투자금액	천불
	외국인 투자비율	%

공장보유 구 분	자가()	공 장 설 립 형 태	신규 건립 입주()	공 장 규 모	대()
	임차()		기존 건물 입주()		중() 소()

기재요령

1. 업종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5단위)까지 적습니다.
2. 건축면적은 공장설립일부터 4년 이내의 건설계획분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3. 공장규모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분류에 따라 적습니다.

(제3쪽)

2. 공장건설계획

구 분	현 재	년	년	년	계
제조시설					
부대시설					
- 부대시설 세부용도					
계					

※ 작성요령 : 각 시설물에 대한 건축면적은 연면적을 적습니다.

3. 생산공정도 해설

생산공정도	생산공정 요약 설명
<pre> graph TD A[] --> B[] B --> C[] C --> D[] D --> E[] </pre>	

(제4쪽)

4. 생산시설 명세

시설명	용량	수량	비고

5. 배출시설 명세

시설명	용량 및 규격 (HP · kW · m³)	수량	배출오염물질		비고
			종류	배출량	
					대 기 ()종 수 질 ()종 소음 · 진동(유 · 무)

※ 작성요령 : 「물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을 적습니다.

6. 용수 · 전력 · 연료의 사용계획

용수(톤/일)		전력(kW/일)		연료		
생활용수 (상수도 · 지하수)	공업용수 (상수도 · 지하수)	일반전력	자가발전	석유 (ℓ/일)	가스 (m³/일)	기타 (톤/일)

(제5쪽)

7. 공장배치도

※ 공장배치도 작성요령: 건축물의 용도 위주로 개략적으로 위치, 면적, 연도별 설치계획만을 표시합니다.

위 임 장

위임자	대표자성명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주 소			
위임내용	I-Food Park 처분신청 용지 매입신청, 추첨 등 관련 제반업무 일체			
수임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위임자 관계			

상기 본인은 수임자에게 위임 내용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붙임 : 인감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

2022년 월 일

위임자 : (인)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출장소장 귀중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인천 서구 검단출장소는 입주관련 인·허가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산업단지 입주관련 인·허가 신청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소 생년월일 및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회사 및 휴대폰)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산업단지 입주계약 해지시까지
- 동의 거부 권리 안내 : 본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계약이 제한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 의 일 : 2022. . .

동 의 인 : (서명)

인천광역시서구검단출장소장 귀하

종 램 확 인 서

□ 확인자

업 체 명 (법인명) :

법인(주민)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상기 본인은 I-Food Park 일반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를 매수 및 입주하고자 하는 바, 공고내용에 따라 사전에 관리기본(변경)계획, 산업단지(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지구단위계획, 부지실태, 도면, 주요기반시설 공급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등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추후 매수한 산업시설용지에 대한 지질(성토, 지반등) 및 지형(경계선 등)에 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인천광역시서구검단출장소장 귀하